

【 11 】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5. 12. 15

발 의 자 : 정창범 의원 외 2인

□ 제정이유

-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
- 공동주택의 입주자, 사용자, 관리주체,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
-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위해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(안 제2조)
- 나.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다.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 시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등(안 제4조)

불 임 :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1부